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285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9. 2.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소43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350만 원, 피고 C는 3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는 피고 B의 근로기간이 2017. 11. 1.부터 2019. 8. 31.까지로 기재되고, 피고 C의 근로기간이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그 고용계약 체결과 피고들의 실제 근무시기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 B에게 380만 원, 피고 C에게 35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원래 원고의 동업자 E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E이 원고를 속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금원은 2018. 9.경 및 10.경 피고들의 근무 대기 또는 수시 근무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3,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근무대기 또는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금원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제2, 3호증)에는 원고의 서명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위 산정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F은 원고와 E의 제안으로 2017. 5.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 F은 2017. 6.경부터 수시로 위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같은 해 7.경 및 8.경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기하였다. 같은 해 10.경부터는 위 사업체에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E의 제안으로 2017. 8. 30.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7. 9.경부터 원고의 사업체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2017. 9.경에는 원고의 근무 대기 요청에 따라 근무 대기하였고, 같은 해 10.경에는 수시 근무만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11.부터는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라. 나아가, 원고의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6~7인의 소규모 회사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근로 사정 역시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직접 피고들의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점, 이것이 E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령 E의 제안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이 2017. 9. 및 2017. 10.경 피고들의 근로대기 또는 수시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이나현, 판사 안정현